청 주 지 방 법 원

보정권고

사 건 2025개회33777 개인회생

신 청 인 (채 무 자) 김진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길 7 2층 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김충환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 래

- 1. 배우자의 "전국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및 최근 5년간 과세한 "(전국단위)지방세 전체 세목별 과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재산의 1/2을 청 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2. 채권자목록과 관련하여,
- ①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증명서에 기재된 **법인** 명칭으로 채권자명을 수정하기 바랍니다(예, 연세희→(주)은혜종합상사 외 다수)
- ② 개인영업자인 경우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 옆에 괄호로 병기하기 바랍니다.
- ③ 물품대금 채권자들(김설빈, 지규호, 최미숙 등)과 채무자 사이 물품거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거래원장 사본, 입출금 금융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자료송부 서만으로는 부족함).
- ④ 채권번호 <u>19,35,45,46,47번</u>에 대한 부채증명서(자료송부서 등)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3. 394우7700 차량의 별제권부채권내역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1번 현대캐피탈의 채권설정액은 **1,500,000원**임)

- 4. 과세증명서에 나타나는 51거2183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시세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만약 <u>처분</u>하였다면 처분대금 사용내역서, 사용처를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기 바랍니다.
- 5. 채무자의 영업소득과 관련하여,
 - ① 2024. 5. ~ 2025. 4.까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매출 및 매입자료(월차임 입금내역, 공과금, 인건비, 기타 매입비용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별 매출집계조회표, 세금계산서, 소득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등)를 첨부하고, 월별로 수입, 지출, 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② 채무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고, 사업용 설비 및 비품, 재고품 등에 대한 평가액(품목, 개수, 평가액 등을 표로 작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③ 주택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해당 부동산등기사항증명 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6. 최근 대출금채권(2번, 3번, 4번, 9번)과 관련하여, 채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도표**로 소명하고.
 - ① 대환대출일 경우 그 원인된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 가족이나 채무자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킨 경우, 그 입금 받은 통장의 금 융자료도 제출하면서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할 것 ③ <u>개인에게 송금</u>한 경우(그 전 그 개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까지 제출한 것은 제외)는 채무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④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원 및 부당사용액(편파변제, 유흥비, 과도한 사치성소비, 주식, 가상화폐, 도박, 인터넷 게임 등)은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채권 번호	대출기관 (채권자)	대출일자 (거래일자)	대출금액 (입금액)	대출금 입금통장	사용일자 (거래일자)	사용금액 (출금액)	사용처 (상세내용)	사용처 은행명 및 계좌번호
	합 계			합계				
	차 액(입금액-출금액)			□청산가치반영 □청산가치 미반영		□ 미반영 사유()

7. 채무자의 은행통장 중 모든 활동성 계좌의 개인회생개시 신청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활동성 계좌의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최종사용

처(본인 계좌로 이체 기재는 안 됨)를 도표로 소명하고,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원 및 부당사용액(편파변제, 유흥비, 과도한 사치성소비, 주식, 가상화폐, 도박, 인터넷 게임 등)은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일 자	총사용금액	사용일자	금 액	사 용 처	비 고
2022. 1.	10,000,000원	2020. 1.	5,000,000원	본인계좌로 이체 (기업:000-000-00)	이체후 대출금상환
2022. 1.		2020. 1.	5,000,000원	00은행 대출금 상환	
2022. 2.					
총 계					_

8. 채무자 명의 모든 카드들의 최근 1년간 이용내역서를 제출하고, 50만 원 이상의 거 래내역에 대한 사용처를 도표로 소명하고,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원 및 부당사용액 (편파변제, 유흥비, 과도한 사치성소비, 주식, 가상화폐, 도박, 인터넷 게임 등)은 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일 자	총사용금액	사용일자	금 액	사용처	비고
2022. 1.	10,000,000원	2020. 1	5,000,000원	본인계좌로 이체 (기업:000-000-00)	이체후 대출금 상환
		2020. 1.	5,000,000원	00은행 대출금 상환	
2022. 2.		V L			
총 계		7			

9. 채무자에 대하여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제출하고 이에 나타난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계약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도표를 작성 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해약, 해지 만기된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계약자성명	보험사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	피보 험자	월 보험료	대출금	해약 환급금	유지 여부
채무자									해지
									유지
합계									

- 10.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소식-자료실"란에 게재된 **"개인회생 제출서류 점검목록표** (2023. 5. 8. 수정 게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목록상 열거된 해당 서류도 모두 제출하기 바랍니다.
- 11. 변제계획안 10항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기 바랍니다.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
 - ①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마다 수입상황을 신고하되, 영

업소득신고서[월별 영업총매출액 및 공제항목, 순이익을 월별로 정리한 소명자료(반드시 카드매출금 및 입금통장 포함)와 함께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최근 1년간 월 평균소득 신고의무).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 및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② 위①항에 따라 산정한 소득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기재된 소대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채무자는 ①항에 따른 소득신고와 동시에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변경신청일 익월부터 변제기간 종료일까지의 가용소득에 반영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다.
 - 다만, 가용소득 증가분이 30%에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안 변경(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즉시 응한다.
- ③ 위 각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12. 이 사건 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의 과오, 고액의 채무, 채무자의 직업과 연령, 낮은 변제율,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 조정 및 변제기간 연장 등 총 변제액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25. 4. 22.

제3회생위원 김 용 대 전자서명완료

등본입니다.

2025. 4. 22.

청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미화

